



공정거래위원회

수신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경유)

제목 신고에 대한 회신 [에스케이이엔에스(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 2022서소0188

사 건 명 : 에스케이이엔에스(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조사인 : 에스케이이엔에스(주)

1. 귀하께서 피조사인이 바로사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이산화탄소가 제거된 LNG 생산',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CCS) 기술은 상용화된 기술', '천연가스 기반 블루수소는 이산화탄소 제거, 친환경 수소'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서 광고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 신고한 건 관련입니다.
2. 위 사건을 심사한 결과, 피조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혐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가. '이산화탄소 제거 LNG', 'CO₂ Free LNG', '탄소중립 LNG' 등 관련: 피조사인의 광고행위는 향후 생산계획에 관한 것으로서 현 시점에서 거짓·과장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5년부터', '포부', '구상', '계획', '추진'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피조사인의 광고행위는 '생산과정'에서의 CO₂ 제거 계획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와 별개로 소비과정에서의 감축계획도 준비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조사인이 'CO₂ 100% 제거'로 광고하거나 구체적인 감축량을 광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 나. '전세계에 상용화된 CCS 기술' 관련: 관련 연구자료에 따라 2020년 기준 전세계 26개 장소에서 CCS 시설이 상업적으로 가동중인 것은 사실로 확인되는 점, 설령 그중 20개 장소에서 EOR 방식으로 CCS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저장방식, CCS 활용목적 등에 따라 CCS 기술의 상용화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

